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42

발의연월일: 2024. 8. 12.

발 의 자:주호영·강선영·김위상

장동혁 · 김종양 · 정희용

이헌승 • 고동진 • 김용태

이인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은 심화되고 있어 육아 부담의 완화를 위해서는 업무 공백을 발생시키는 휴직·휴가 기간의 확대보다는 근무장소 변경 및 근로시간 조정 등의 업무 유연화가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육아기에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자택에서의 근무 등 원격근 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일·가정의 양립을 보다 지원하고자 함(안 제19조의7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9조의7(육아기 원격근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자택에서의 근무 또는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기기 등을 이용한 근무(이하 "육아기 원격근무"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에서의 협의·의결에 따라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육아기 원격근무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은 2년 이 내로 하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에서의 협의·의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③ 제1항에 따라 육아기 원격근무를 허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근로 자에게 시업시간·종업시간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근무조건 을 붙일 수 있다.

- ④ 사업주는 육아기 원격근무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원격근무가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원격근무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 ⑥ 육아기 원격근무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전설> 제19조의7(육아기 원격근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 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자택에서의 근무 또는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기기 등을 이용한 근무(이하 "육아기 원격근무"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에서의 협의・의결에 따라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아기 원격근무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 또는 「근로자참여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에서의 협의・의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근무를 허용하는 사업주는 해 당 근로자에게 시업시간·종업 시간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필 요한 근무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사업주는 육아기 원격근무 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 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원격근무가 끝난 후에 그 근로 자를 육아기 원격근무 전과 같 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 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 켜야 한다.

⑥ 육아기 원격근무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